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빗 좋은 개살구?
-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의 입법을 추진
 - 두 입법안의 핵심 취지는 다양한 노동형태 자체를 부정하거나 획일적인 근로계약관계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자 추정 제도〉

- 근로자 추정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 등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진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제공자가 정보가 없어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오분류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계약관계,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배분하고, 반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법리적 장치임

- 따라서 근로자 추정 제도가 입법된다고 해서 모든 플랫폼·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더 많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에 대해 더욱 적확하게 판단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음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관한 법률임
 - 이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과의 합리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 향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별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음
-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도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며,
 -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현장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확립해 가겠음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26)
		담당자	서기관	신솔원 (044-202-7544)
담당 부서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책임자	과 장	허기훈 (044-202-7761)
		담당자	사무관	배인 (044-202-7762)